

교육만족도조사및환류에관한시행세칙

제정 2015.02.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만족·상담센터운영규정 제3조의 3의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환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교육만족도 조사라 함은 대학의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하여 직·간접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, 그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대상) 교육만족도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생 및 재학생
2. 졸업생
3. 학부모
4. 산업체 및 사회기관 등의 유관 기관

제3조(조사의 종류) 교육만족도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생 실태조사
2. 재학생 의식조사
3. 졸업생 만족도조사
4. 학부모 만족도조사
5. 산업체 및 기관 의식 조사
6. 위 호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
7. 기타 교육만족도 조사

제4조(조사시기) 교육만족도 조사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연1회 이상 시행한다.

제5조(조사의 주체) ① 교육만족도 조사의 주체는 교육만족·상담센터와 해당 업무 소관 부서로 구분하며, 교육만족·상담센터는 대학의 모든 교육만족도 조사를 총괄한다.

② 대학 전반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조사는 교육만족·상담센터에서 주관하며, 각 개별 조사는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진행한다.

③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조사 시행 계획 수립 시와 실시 후 결과 보고 시 교육만족·상담센터를 경유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사방법 및 익명성 보장) ① 교육만족도 조사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설문조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설문지 작성 조사 중 선택하여 실시한다. 단, 조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모든 조사는 성명, 학번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자료 수집은 금지하며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7조(조사문항) 교육만족도 조사의 문항은 조사주체가 각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사절차) ① 조사 주체별 조사계획 및 일정을 수립한다.

② 조사 대상 및 문항, 조사방법을 결정한다.

③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처리를 한다.

④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
제9조(결과보고 및 환류) ① 조사가 종결되면 즉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 주체가 교육만족·상담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만족·상담센터를 경유하여야 한다.

② 조사결과로 도출된 내용은 환류하여 개선하고 개선 결과는 공지한다.

③ 교육만족·상담센터에서는 교육만족도 전반에 관하여 결과 보고를 하고 대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.

제10조(세부사항) 교육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폐지한다.